

『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10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11월 6일

제1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등에 대하여 상위 관련법에 의거 추가, 신설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고객들의 서비스를 향상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대상 추가, 신설
 -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시설사용료 50% 감액 (안 제10조제2항)

-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환자 시설사용료 50% 감액(안 제10조7항)
- 특수임무부상자 및 유족,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 시설사용료 50%감면 (안 제10조제8항)

○ **사용료 감액 명문화**(안 제10조제5항)

- 1인 2종목 이상 신청 시 사용료의 20% 할인

○ **중복 감액 적용 요구에 따른 민원 해소** (안 제10조제9항)

-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 명문화

○ **동계 시설이용 시간 확대 【별표1】**

- 야간사용은 18:00~22:00로 동계시간 (동계는 17:00~21:00) 삭제

라. 참고사항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
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, 고엽제후유증 장애 등급 환자, 특수임무부상자 및 유족,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50% 감면토록 하였음
- 체육시설 이용자가 1인 2종목 이상 신청시 사용료의 20%를 할인토록 함
- 사용료의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함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에 의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대상을 추가·신설 하고 이용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